## 제2021-227호 2021년 12월 2일(목)



# 보

#### 시정지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23

61

62

63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 시 고 0 여수시 고시 제2021-525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0 여수시 고시 제2021-5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6 0 여수시 고시 제2021-533호 사물주소 부여 • 변경 • 폐지 고시 7 곳 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녹지,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ㅇ 여수시 공고 제2021-3197호 사전열람공고 0 여수시 공고 제2021-319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11 ㅇ 여수시 공고 제2021-3199호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13

제2021-3203호 여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공고 알림

제2021-3225호 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6

제2021-3214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금봉리 984번지)

제2021-3224호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제2021-3215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 기 타

ㅇ 여수시 공고

회				
람				

여수시 고시 제2021-525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

#### 여 수 시 장

-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43번지 일원
-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705)사업

나. 명 칭 : 돌산읍 진두마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 4,996m²

나. 규 모 : L=478m B=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5. 사업시행기간(변경): 2020. 6.18.~2021.12.31. (변경 2023.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및 도로과(☎061-659-4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토지조서(변경없음)

od HI	토 지	-1 41	-10	지적	편입	소 유 자		=	소유권이오	l의 권리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면적 (㎡)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비고
1	돌산읍 우두리	799-6	도	1,002	11	국유지	국토 교통부				
2	п	799-42	도	403	64	국유지	국토 교통부				
3	ıı	799-43	대	135	85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7	김인숙				
4	11	799-41	대	248	1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6-4	조창순				
5	п	799-49	전	5,350	998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7	김인숙				
6	"	799-53	전	1,801	489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0-1	하영찬				
7	ıı ı	799-58	대	602	75	공유지	여수시				
8	n n	799-180	전	1,182	395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33	이부언				
9	п	799-186	전	750	2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22, 612동 402호	조혜자				
10	"	799-200	전	9	3	공유지	여수시				
11	ıı ı	799-142	도	47	12	공유지	여수시				
12	"	799-78	도	472	18	공유지	여수시				
13	"	799-141	도	21	15	공유지	여수시				
14	"	799-175	대	193	118	공유지	여수시				
15	11	799-75	저	9,248	1,05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86 빌라아파트 603호	손영주				
15	·	799-75	전	9,248	1,0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홍실아파트 3동 505호	김찬지				
16	ıı ı	799-136	전	617	90	공유지	여수시				
17	n n	799-198	전	728	315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16	유재석				
18	11	799-104	전	496	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64,1106동 701호	김광화				
						원주시 단구동 519-3	김인덕				
19	ıı ıı	799-135	전	1,667	365	원주시 단구동 519-3	김연경	동작 세무서		근저당권	
						원주시 단구동 519-3	김지희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89, 104동 701호(조례동, 금당대림아파트)	문정례				
20	0 " 799-81 전 5,315	29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65-38, 202동 1003호(도룡동, 스마트시티)	주유리							

Mul.	토 지	-1 41	-10	지적	편입	소 유 자		=	<del>소유권</del> 이오	l의 권리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m²)	면적 (㎡)	주 소	성 명	권리 내 <del>용</del>	성명	주소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73번길 40, 601동 902호 (수완동, 수완피오레6단지)	이수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73번길 40, 601동 902호 (수완동, 수완피오레6단지)	주유정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4길 11, 101동 202호	이현배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4길 11, 101동 202호	주유진				
21	II	794-88	임	40,683	280	공유지	여수시				
22	п	799-9	전	585	75	공유지	여수시				
	계			4,996							

##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소	재지	물건의	그ㅈ미			소 유 자		이해괸	계인	
연번	위치	번지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성명	주소	권리 내 <del>용</del>	성명	주소	비고
1	돌산읍 우두리	799-59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17.0	김인숙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7				
2	11	799-53	하우스	파이프 비닐	75.0	하영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0-1				
3	11	799-53	하우스	파이프 비닐	135	하영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0-1				

여수시 고시 제2021 - 532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ㆍ사용 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공사내용
(허가(승인)일)	주 소	성 명			교부일자	
2021-40 ('21. 6. 22.)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448-1번지 일원	377 m²	'21. 12. 2.	돌산읍 송도서편항 선착장 설치공사
2021-45 ('21. 6. 23.)	계수시 시성로 1 (학동)	(섬자원개발과)	여수시 남면 우학리 982번지 일원	495.22 m²	'21. 12. 2.	남면 학동마을 물양장 확장공사

2021. 12. 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1 - 533호

## 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부여, 변경, 폐지한 지진옥외대피장소의 사물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

여 수 시 장

1. 고시일 : 2021. 12. 2.

2. 고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사물주소 부여, 변경, 폐지 내용

순번	업무구분	사물명	고유번호	사물주소	사물주소 확정일	부여,변경,폐지 사유	비고
		별	지	7]	재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6)에문의 바랍니다.

## 지진옥외대피장소 사물주소 부여 변경 폐지 고시 조서

순번	업무구분	사물명	고유번호	사물주소	사물주소 확정일	부여,변경,폐지 사유	
1	부여	거문초등학교 운동장	46130051	전리남도 여수시 삼신면 녹산등대길 8-17 지진옥외대피장소	20211129	사자진옥외대피장소 사물주소 신규 부여	
2	부여	개도중학교 운동장	46130050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화산3길 8 지진옥외대피장소	20211126	사지진옥외대피장소 사물주소 신규 부여	
2	당초	여문공원	46130049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60, 지진옥외대피장소	20191028	X *017 H/3	
3	변경	여문공원	46130049	전라남도 여수시 어문문화2길 46 지진옥외대피장소	20211125	주 출입구 변경	
330	당초	거북선공원	46130048	전라남도 여수시 선소로 77, 자진옥외대피장소	20191029	X ±017 H73	
4	변경	거북선공원	46130048	전라남도 여수시 거북선공원3길 9 지진옥외대피장소	20211125	주 출입구 변경	
<u>a</u>	당초	자산공원	46130047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77, 지진옥외대피장소	20191028	T +017 H2	
5	변경	자산공원	46130047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88 지전옥외대피장소	20211125	주 출입구 변경	
0	당초	강남정공원	4613004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2, 저진옥외대피장소	20191028	22333	
6	변경	강남정공원	4613004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2월 70 제진옥의대피장소	20211125	주 출입구 변경	
à	당초	돌산공원	4613004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578-57, 지진옥외대피장소	20191104	20000000 T 400000	
7	변경	돌산공원	4613004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578-61 지진옥외대피장소	20211125	주 출입구 변경	
8	당초	무선초등학교 운동장	46130040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1월 31, 자진옥외대피장소	20191028		
8	변경	무선초등학교 운동장	46130040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2길 31 자진옥외대피장소	20211125	주 출입구 변경	
8	당초	상암초등학교 묘도분교 운동장	46130043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77 지진옥외대피장소	20191028	1444	
9	변경	상암초등학교 묘도분교장 운동장	46130043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77 지진옥외대피장소	20211125	사물명칭 변경	
282	당초	여남중/고학교 운동장	46130010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우살해안길 5 지진옥외대피장소	20191029	(IDNA) IVA	
10	변경	여남중,고등학교 운동장	46130010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우살해안길 5 자진옥외대피장소	20211126	사물명칭 변경	
11	国지	화정초등학교 운동장	46130014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화산길 50 자진옥외대피장소	20210709	화정초등학교 옆 개도중학교 지진옥의대피장소사물주소 부여에 따른 폐지	
12	国지	거문초등학교 운동장	46130015	전리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학교길 25 자진옥외대피장소	20210709	폐교로 인한 사물주소 폐지	

#### 여수 도시계획시설(녹지,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녹지,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

여 수 시 장

-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선원동 185-2번지 일원
-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녹지, 주차장)사업
  - 나. 명 칭: 여수 학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주차장)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352m → 3,351m
  - 가. 경관녹지: **2,561㎡(주차장 중복결정 791㎡)** → **2,560㎡(주차장 중복결정 791㎡)**
  - 나. 주 차 장: 791㎡(경관녹지 중복결정 791㎡)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정승미
  - 나. 주 소: 여수시 장성1길 18-1(안산동)
-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9. 9. 2.~2021.12.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 7.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 8. 공람기간: 2021. 12. 2. ~ 2021. 12.15.(14일간)
- 9.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토지조서(변경)

	Fzl			지적	편입 면적	소	: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면적 (m')	성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 <del>용</del>	비고
	<b>-</b> n	/			2,56 1						당초
	총 계 (	(15필지	)		2,56 0						변경
1	선원동	183-2	전	126	126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2	선원동	184	전	10	10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3	선원동	185-2	전	524	524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4	선원동	193-3	전	66	66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5	선원동	194-9	잡	425	425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6	선원동	899-1 4	전	381	381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7	선원동	899-1 7	임	217	217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8	선원동	899-2	임	24	24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9	선원동	1183- 60	도	26	20	국(기획재정부	_				당초
9	선원동	1183- 60	도	20	20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변경
10	선원동	1187 – 5	구	264	36	국(국토교통부	_				당초
10	선원동	1187 – 9	구	36	36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변경
11	선원동	183-3	도	96	96	문*수	여수시 쌍봉면 선원리 11**				당초
11	선원동	183-3	도	96	96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변경
12	선원동	185-3	도	139	139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13	선원동	193-4	도	20	20	정*홍	여수시 쌍봉면 선원리 1**				당초
13	선원동	193-4	도	20	20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변경
14	선원동	194-7	도	281	141	박서봉	여수시 쌍봉면 선원리 2**				당초
14	선원동	194-1 1	도	141	141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변경
15	선원동	899-2 5	도	336	336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왜인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박*한	여천군 쌍봉면 선원리 1**	지분 2330/2680	당초
15	선원동	899-2 5	도	336	335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변경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가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

여 수 시 장

-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학동 1번지 일원
-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783)사업
  - 나. 명 칭: 여수 학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373.3m² → 1,374.4m²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정승미
  - 나. 주 소: 여수시 장성1길 18-1(안산동)
-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0. 7. 9.~2021.12.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 7.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 8. 공람기간: 2021. 12. 2. ~ 2021. 12.15.(14일간)
- 9.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토지조서(변경)

	1			지적	편입	소	유 자		이해관계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²)	편입 면적 (m²)	성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초 계	(१ जो नो	`		1,373.3						당초
	총 계 (2필지)				1,374.4						변경
1	학동	1	대지	32,54 5	213.3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당초
1	학동	1-2	대지	214.4	214.4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장성1길 18-1, 2층				변경
2	학동	135	도로	7,389. 2	1,160	여수시	_				

####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2025년 여수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기 공람 공고 내용 중 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 합니다.

2021. 12. 2. 여 수 시 장

#### 1. 주요내용

- 공 람 내 용: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 내용적 범위: 용도지역·구역 결정(변경)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항 등
- 2. 공람기간: 2021. 12. 2. ~ 2021. 12. 16.
- 3.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659-4012~4014]
- 4.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5. 기타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 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연락처 기재)

※ 기타,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I.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석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 당초

	-, u		면 적 (m²)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합 계	1,025,646,646.5	감) 831,280.0	1,024,815,366.5	100.0	
	소 계	25,574,299.6	증) 46,162.0	25,620,461.6	2.5	
	제1종전용주거지역	995,494.0	감) 49,230.0	946,264.0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40,824.4	_	40,824.4	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75,701.0	증) 36,449.0	13,112,150.0	1.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9,692,471.3	증) 19,852.0	9,712,323.3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661,241.0	_	661,241.0	0.1	
	준주거지역	1,108,567.9	증) 39,091.0	1,147,658.9	0.1	
	소계	2,989,461.3	감) 3,336.0	2,986,125.3	0.3	
	중심상업지역	351,070.0	_	351,070.0	0.0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2,638,391.3	감) 3,336.0	2,635,055.3	0.3	
	근린상업지역	_	_	_	_	
	유통상업지역	_	_	_	_	
	소계	58,959,609.2	_	58,959,609.2	5.8	
공업	전용공업지역	_	_	_	_	
지역	일반공업지역	55,742,871.4	_	55,742,871.4	5.5	
	준공업지역	3,216,737.8	_	3,216,737.8	0.3	
	소계	215,070,969.4	감) 25,900.0	215,045,069.4	21.0	
녹지	보전녹지지역	60,067,352.0	증) 495,855.6	60,563,207.6	5.9	
지역	생산녹지지역	9,151,359.0	_	9,151,359.0	0.9	
	자연녹지지역	145,852,258.4	감) 521,755.6	145,330,502.8	14.2	
	소계	69,673,567.0	증) 1,817,559.0	71,491,126.0	7.0	
	관리지역	250,881.0	감) 250,881.0	_	_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23,130,052.0	증) 917,284.0	24,047,336.0	2.3	
	생산관리지역	18,506,099.0	증) 718,934.0	19,225,033.0	1.9	
	계획관리지역	27,786,535.0	증) 432,222.0	28,218,757.0	2.8	
	농림지역	71,170,372.0	감) 2,399,271.0	68,771,101.0	6.7	
	자연환경보전지역	539,705,803.0	감) 247,165.0	539,458,638.0	52.6	
	용도지역 미지정	42,502,565.0	감) 19,329.0	42,483,236.0	4.1	

<sup>※</sup>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용도지구 환원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지역 조정에 의한 총 면적 감소 (관리지역: 23,461㎡, 생산관리지역: 150㎡, 농림지역: 807,669㎡)

#### - 재공람

	u		면 적 (m²)		구성비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합 계	1,025,646,646.5	감) 831,280.0	1,024,815,366.5	100.0	
	소 계	25,574,299.6	증) 46,162.0	25,620,461.6	2.5	
	제1종전용주거지역	995,494.0	감) 49,230.0	946,264.0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40,824.4	_	40,824.4	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075,701.0	증) 36,449.0	13,112,150.0	1.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9,692,471.3	증) 20,102.0	9,712,573.3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661,241.0	_	661,241.0	0.1	
	준주거지역	1,108,567.9	증) 38,841.0	1,147,408.9	0.1	
	소계	2,989,461.3	감) 3,336.0	2,986,125.3	0.3	
	중심상업지역	351,070.0	_	351,070.0	0.0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2,638,391.3	감) 3,336.0	2,635,055.3	0.3	
, ,	근린상업지역	_	_	_	_	
	유통상업지역	-	_	_	_	
	소계	58,959,609.2	_	58,959,609.2	5.8	
공업	전용공업지역	_	_	_	_	
지역	일반공업지역	55,742,871.4	_	55,742,871.4	5.5	
	준공업지역	3,216,737.8	_	3,216,737.8	0.3	
	소계	215,070,969.4	감) 25,900.0	215,045,069.4	21.0	
녹지	보전녹지지역	60,067,352.0	증) 495,855.6	60,563,207.6	5.9	
지역	생산녹지지역	9,151,359.0	_	9,151,359.0	0.9	
	자연녹지지역	145,852,258.4	감) 521,755.6	145,330,502.8	14.2	
	소계	69,673,567.0	증) 1,810,631.0	71,484,198.0	7.0	
	관리지역	250,881.0	감) 250,881.0	_	_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23,130,052.0	증) 929,626.0	24,059,678.0	2.3	
' '	생산관리지역	18,506,099.0	증) 718,934.0	19,225,033.0	1.9	
	계획관리지역	27,786,535.0	증) 412,952.0	28,199,487.0	2.8	
	농림지역	71,170,372.0	감) 2,399,271.0	68,771,101.0	6.7	
	자연환경보전지역	539,705,803.0	감) 240,237.0	539,465,566.0	52.6	
	용도지역 미지정	42,502,565.0	감) 19,329.0	42,483,236.0	4.1	

<sup>※</sup>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용도지구 환원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지역 조정에 의한 총 면적 감소

(관리지역 : 23,461㎡, 생산관리지역 : 150㎡, 농림지역 : 807,669㎡)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u> </u>		<u> </u>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변	경	면 적	적 =	변 경 사 유							
	ᇿᆇ		기 정	당초	변경	(m²)	률 (%)								
	소기	1		17개소		12,342									
1	여수089-005	남면 유송리 983-8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279	80% 이하								
2	여수090-013	남면 유송리 697-1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932	80% 이하								
3	돌산052-031	돌산읍 율림리 산55-12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698	80% 이하								
4	돌산062-008	돌산읍 금성리 산233-3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846	80% 이하								
5	돌산062-011	돌산읍 율림리 산22-2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231	80% 이하								
6	돌산062-012	돌산읍 율림리 산22-2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210	80% 이하								
7	돌산062-016	돌산읍 금성리 산231-1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84	80% 이하								
8	돌산062-017	돌산읍 금성리 산253-1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0	80% 이하	관계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의견을 반영하여,							
9	돌산062-018	돌산읍 금성리 산253-1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4	80% 이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원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호 및							
10	돌산063-010	돌산읍 율림리 산39-2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03	80% 이하	보전용도의 연속성 도모를 위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11	돌산063-015	돌산읍 율림리 78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5	80% 이하								
12	돌산063-016	돌산읍 율림리 78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94	80% 이하								
13	돌산071-001	남면 유송리 산129-2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2,043	80% 이하								
14	소리002-006	남면 안도리 1131-4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234	80% 이하								
15	소리002-007	남면 안도리 1223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2,308	80% 이하								
16	소리002-008	남면 안도리 1225-1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851	80% 이하								
17	소리012-002	남면 연도리 1185임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400	80% 이하								

## Ⅱ.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조석

#### ■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지구명	지구의	위 치	고도제	한내용	면 적	최 초	비고
十七	변호 번호		세분	위 치	공람	재공람	면 적 (m²)	결정일	비고
신설 (재공 람)	1	봉산 2지구	고도지구	봉산동 170일원	20층 이하, 60m 이하	표고 50m이하	53,454	_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고도지구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재공람)사유
1	봉산2지구	○고도지구 신설 - 면적 : 53,454㎡ - 제한내용 공 람 : 20층 이하, 60m 이하 재공람 : 표고 50m 이하	○남산공원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를 위하여 고도 제한 내용의 명확화

## Ⅲ. 용도구역 결정(변경)(안) 조석

##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조서 : 금회 계획에서 제척

도면표	시번호		위 치		ы <del>д</del>		
공람	재공람	구 역 명	위 치	기 정	공 람	재공람	비고
4	_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수시 화정면 외5개 읍면동	412,756,589	412,749,661 (감)6,928㎡	412,756,589 (변경없음)	

#### ■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m²)	변경(재공람)사유
재공람	_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401-1번지 일원	- 공 람 : 412,756,589㎡ →412,749,661㎡ (감)6,928㎡ - 재공람 : 412,756,589㎡ (변경없음)	○ 관련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협의 의견 반영 — 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해양보호생물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 Ⅳ.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모	·		ol Tl			11.0	<b>T</b> 0	<b>₽</b>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3	23	25	주간선 도로	6,058	대1-5 (학동 959-3도)	중1-82 (용주리1403-28답)	일반 도로	-	건고-643 (86.12.30.)	
공람	대로	3	23	25	주간선 도로	6,833	대1-5 (학동 959-3도)	중1-82 (용주리1403-28답)	일반 도로	-		
재공람	대로	3	23	25	주간선 도로	6,833	대1-5 (학동 959-3도)	중1-82 (용주리1403-28답)	일반 도로	_		개설 현황반영
기정	중로	1	12	20	국지도로	145	대1-1 (미평동 596도)	미평동598-17철	일반 도로	10호광장	여고-234 (20.07.01)	
공람	중로	1	12	20	국지도로	227	대1-1 (미평동 596도)	대로3-12 (미평동598-17철)	일반 도로			
재공람	중로	1	12	20	국지도로	145	대1-1 (미평동 596도)	미평동598-17철	일반 도로			미반영
기정	소로	2	538	8	국지도로	549	소2-294 (봉강동524-14대)	소2-534 (봉강동203-51임)	일반 도로	진성여고	전남고-15 (77.01.27.)	
공람	소로	2	538	8~10	국지도로	563	소2-294 (봉강동524-14대)	소2-534 (봉강동32도)	일반 도로			
재공람	소로	2	538	8	국지도로	563	소2-294 (봉강동524-14대)	소2-534 (봉강동203-51임)	일반 도로			-단절 구간연결 -보행로 미반영
기정	소로	3	231	6	국지도로	380	대3-4 (둔덕동 491-1대)	소1-15 (둔덕동 503-4대)	일반 도로		전남고-191 (82.12.23)	
공람	소로	3	231	6	국지도로	380	대3-4 (둔덕동 491-1대)	소1-15 (둔덕동 503-4대)	일반 도로			
재공람	소로	3	231	6	국지도로	380	대3-4 (둔덕동 491-1대)	소1-15 (둔덕동 503-4대)	일반 도로			미반영
기정	소로	3	232	6	국지도로	368	대3-4 (둔덕동 490-1대)	소1-15 (둔덕동 501-15대)	일반 도로		전남고-191 (82.12.23)	
공람	소로	3	232	6	국지도로	368	대3-4 (둔덕동 490-1대)	소1-15 (둔덕동 501-15대)	일반 도로			
재공람	소로	3	232	6	국지도로	368	대3-4 (둔덕동 490-1대)	소1-15 (둔덕동 501-15대)	일반 도로			미반영
기정	소로	3	235	6	국지도로	145	중1-12 (둔덕동 504-4대)	소1-15 (둔덕동 504-1대)	일반 도로		전남고-191 (82.12.23)	
공람	소로	3	235	6	국지도로	145	중1-12 (둔덕동 504-4대)	소1-15	일반 도로			
재공람	소로	3	235	6	국지도로	145	중1-12 (둔덕동 504-4대)	소1-15 (둔덕동 504-1대)	일반 도로			미반영
기정	소로	3	236	6	국지도로	148	중1-12 (둔덕동 569-5대)	소1-15 (둔덕동 568-7대)	일반 도로		전남고-191 (82.12.23)	
공람	소로	3	236	6	국지도로	148	중1-12 (둔덕동 569-5대)	소1-15 (둔덕동 568-7대)	일반 도로			
재공람	소로	3	236	6	국지도로	148	중1-12 (둔덕동 569-5대)	소1-15 (둔덕동 568-7대)	일반 도로			미반영
공람	소로	1	7	10	국지도로	29	(조화리 859-1)	소로3-⑤ (조화리 714-2)	일반 도로			
재공람	소로	1	7				, 74 6		01:11			미반영
공람	소로	3	5	6	국지도로	266	소로1-⑦ (조화리714-4)	(조화리 695-4)	일반 도로			
재공람	소로	3	5									미반영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	FH 가비 O	버거/제고라/기 O
변경전 도로명	(공람)	(재공람)	변경내용	변경(재공람)사유
대로3-23	대로3-23	대로3-23	<ul> <li>○도로 개설현황 반영</li> <li>- 공 람: L=6,058m → 6,833m</li> <li>(증) 775m</li> <li>- 재공람: L=6,058m → 6,833m</li> <li>(증) 775m</li> </ul>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구간에 대해 도로 개설 현황 반영 및 사유지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고려한 단절구간 연결
중로1-12	중로1-12	중로1-12	- 재공람 : L=145m (변경없음)	○도로기능과 공원기능의 상충 등을 고려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소로2-53 8	소로2-53 8	소로2-53 8	○도로계획 조정 - 공 람 : B=8m→8~10m L=549m → 563m - 재공람 : B=8m (변경없음) L=549m → 563m	○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른 단절구간 고려 선형 변경 -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보행로 확보는 도로 기능상 실효성 부족으로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소로3-23 1	소로3-23 1	소로3-23 1	○도로계획 조정 - 공 람 : 하천 변 2m 점용을 통한 보행로 설치 - 재공람 : 보행로 미반영	○ 하천점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연등천 변 생태 환경 보호 등을 고려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소로3-23 2	소로3-23 2	소로3-23 2	○ 도로계획 조정 - 공 람 : 하천 변 2m 점용을 통한 보행로 설치 - 재공람 : 보행로 미반영	○하천점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연등천 변 생태 환경 보호 등을 고려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소로3-23 5	소로3-23 5	소로3-23 5	○도로계획 조정 - 공 람 : 하천 변 2m 점용을 통한 보행로 설치 - 재공람 : 보행로 미반영	○ 하천점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연등천 변 생태 환경 보호 등을 고려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소로3-23 6	소로3-23 6	소로3-23 6	○도로계획 조정 - 공 람 : 하천 변 2m 점용을 통한 보행로 설치 - 재공람 : 보행로 미반영	○ 하천점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연등천 변 생태 환경 보호 등을 고려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_	소로1-⑦	_	○도로계획 조정 - 공 람 : (신설)B=10m, L=29m - 재공람 : 미반영	
_	소로3-⑤	_	○도로계획 조정 - 공 람 : (신설)B=6m, L=266m - 재공람 : 미반영	○도로 현황 및 도로개설의 불요불급성 등을 고려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 나. 주차장

##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0] 7]	Ę	면 적 (m	i)	최 초	비고
		시 설 명	위 치	기 정	공 람	재공람	결정일	비 고
폐지	74	주차장	돌산읍 평사리 산209-7임 일원	6,025	- (감 6,025)	6,025 (변경없음)	여고-67 (09.05.13.)	
신설	1	주차장	서교동 637-1 일원	_	2,381 (중 2,381)	_ (미반영)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재공람)사유
74	주차장	- 공 람 : 주차장 폐지 - 재공람 : 주차장 시설 존치	○관련 부서 의견 반영에 따라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1	주차장	- 공 람 : 주차장 신설(A=2,381㎡) - 재공람 : 주차장 미반영	○관련 부서 의견 반영에 따라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 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서

## 1. 거문지구

-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od xl-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別 立	<u>1</u>
기정	소로	2	1469	6~8	국지도로	123	소3-825 (거문리 99-1도)	소3-833 (거문리 125-5전)	일반도로		
공람	소로	3	10	6	국지도로	159	소3-825 (거문리 99-1도)	소3-833 (거문리 123-1대)	일반도로		
재공람	소로	3	10	6	국지도로	99	소3-825 (거문리 99-1도)	소3-833 (거문리 123-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33	6	국지도로	273	소3-825 (거문리 128-4대)	거문리 142전	일반도로		
공람	소로	3	833	6	국지도로	241	소3-⑩ (거문리 123-1대)	거문리 142전	일반도로		
재공람	소로	3	833	6	국지도로	273	소3-⑩ (거문리 123-1대)	거문리 142전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재공람)사유
소로 2-1469	소로 3-⑩	○도로계획 조정 - 공 람 : B=8m→6m, L=123m→159m (증) 36m - 재공람 : B=8m→6m, L=123m→99m (증) 26m	○관련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삼산파출소 편입 최소화 등을 고려 선형 변경
소로 3-833	소로 3-833	<ul> <li>도로 노선 및 연장 변경</li> <li>-공 람: L=273m→241m</li> <li>(감) 32m</li> <li>-재공람: L=273m(선형변경)</li> </ul>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부지 제척에 따른 션형변경 및 소로3-⑩ 설계내용 반영에 따른 연장 조정

- 2. 둔병지구(신설): 금회계획에서 제척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_1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비고		
	공람	재공람	구칙경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미끄
	4	_	둔병지구	화정면 조발리 403전 일원	_	_	_	미반영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ュ	분	도면표시번호		변 경 내 용	변경(재공람)사유		
'		공람	재공람	년 0 계 0	COMO BATT		
_	-	4	_	- 공 람: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6,928㎡) - 재공람:지구단위계획구역 미반영	○관계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의견 반영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 대상지 주변 생활환경 보호 및 해양보호생물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척 필요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공람

구 분		구성비(%)	비고		
⊤ ਦ	기 정	변 경	변경후	一十3円(70)	ما عد
합 계	6,928	-	6,928	100.0	
계획관리지역	_	증) 6,928	6,928	100.0	
자연환경보전지역	6,928	감) 6,928	-	-	

- 재공람 :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공람

도 면 표 시	0] =]	용도지역		다 7년/ <sub>~~</sub> ²\	용적률	거리(버거\)10	
변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	결정(변경)사유	
_	화정면 조발리 403전 일 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 관리지역	6,928	100%	<ul><li>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li></ul>	

- 재공람: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 (나) 용도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 - 공람

도면	7 W H	ol =1	면 적 (m²)			nl ¬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_	수산자원보호구역	화정면 조발리 403전	6,928	감) 6,928	_	

- 재공람 :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 ■ 용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 - 공람

도 면 표 시	위치	용도지역		ᄜᄸᄵ	결정(변경)사유		
# 시 번호	H 1	기 정	변 경	면 적(m²)	결정(현경 <b>)</b> 기규		
_	화정면 조발리 403전 일 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_	6,928	<ul> <li>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li> </ul>		

- 재공람 : 재정비 계획에서 제척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 지침」공고

여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공부터 사후 수질관리까지 우리시만의 대응책이 필요함에 따라「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하여 우리시 수질오염 방지 및 각종 생활환경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 여 수 시 장

#### 1. 목 적

- 이 지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 및 설계시공업과 관련 불량제품 유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생활민원 발생과 하천 등 공공수역 의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수질 을 보전하고자 한다.
  -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반응조의 용적부하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별 산정만으로 정해진 용량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하기 쉽지 않으므로 우리 시에 설치 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세부시공 기준을 정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자하고자 한다.
- 2. 적용범위: 「하수도법」제3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하수도법」제7 조(방류수 수질기준)와 관련하여 제조 및 시공(설치)하는 시 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 3. 주요내용

- o 준공 전 사전검사 실시(설치신고서 일치여부 확인)
  - ※ 제품의 두께 측정 및 격판파손과 누수 여부 확인 등
- o 사후실명제 실시(시공업체, 시공일, 시설규모, 처리방법, 책임자 등 기재)
- o 1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은 산정된 오수발생량보다 여유율 30%이상 두어 처리시설 규모 산정
- o 단지형 주택(3기구 이상)의 경우 오수발생량 합이 2m³/일 경우 개별오수처리시설 설치
- o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시공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

#### 4. 지침 시행일 및 경과조치

- o 이 지침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2022. 1. 1.)에 시행한다.
- o 시행일 이전에 신고(변경신고 포함)한 오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는 기 존의 준공검사 방법을 적용한다.

#### 5. 세부내용

o 이 지침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1부. 끝.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 2021



## 목 차

I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페이ス
1. 목 적	4
2. 적용범위	
3. 공통사항	
4. 시공방법 및 규정	6
Ⅱ. 사전 검사 및 준공 검사 내용	
1. 사전검사 시	9
2. 준공검사 시	10
Ⅲ.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지침예시 (도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지침 예시 (도면)	11
IV. 부 칙	
부 칙	29
[붙임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30
[붙임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31
[붙임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유의사항	32
[붙임4] 공사 중 사진촬영 방법	33
[붙임5] 콘크리트 박스 설치기준	33
[붙임6]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Check List	34
[붙임7] 오수처리시설 사전검사 신청서	35
[붙임8]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시 준수사항	36
[붙임9] 맨홀뚜껑 도색 및 표시문(예시)]	37

## I.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 1. 목 적

- 가. 이 지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 및 설계시공업과 관련 불량제품 유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가중 생활민원 발생과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자 한다.
- 나.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반응조의 용적부하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별 산정만으로 정해진 용량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하기 쉽지 않으므로 우리 시에 설치 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세부 시공 기준을 정 하고 준공 전 사전검시를 실시함으로써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 2. 적용 범위

#### 가: 관련근거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변경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0조 및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2조(방류수 수질검사 등)

나.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 수질기준)와 관련하여 제조 및 시공(설치)하는 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 3. 공통사항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설치)시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또는 같은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설치)토록하여 부실시공(설치)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등록한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시설 의 설계도서와 일치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재질검사를 받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신청 시 재질검사 성적서 첨부)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하기 전에 처리시설의 재질 및 처리공법,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 방수처리 여부 등 여수시 설계·시공 지침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3항(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기준 및 「여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는 「환경부 고시 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하되, 건물 여건 및 사전에 충분한 조사·예측한 자료를 토대로 실 오수량(업종, 용도별 등)을 산정하여 설계하고, 사후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방류수 수질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설치시공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에 대한 시공 후 1년간 사후관리와 건축주에게 관리메뉴얼 제시 및 안내를 실시한다.
  - ※ 사후실명제(시공업체, 시공일, 시설규모, 처리방법, 책임자 등 기재)를 실시 공개한다.
  -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 준공이후 부터 건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생활하수)을 「하수도법」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환경(수질)오염을 방 지하는 환경 정화처리 시설임을 명시한다.

## 4. 시공방법 및 규정

- 가. 제조 및 시공(설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품질관리를 확실하게 하여 제품별 형상, 치수 등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 1) 맨홀등 크기 및 위치는 맨홀등을 최대한으로 높이 쌓은 상태라도 조 안의 전수면이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보수점검 시에 조작할 필요가

있는 내부시설이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모든 맨홀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화플라스틱(FRP 혼합소재) 이상의 제품으로 우물정자(#)형 안전망(STS환봉)이 내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 2) 각 단위장치의 내부벽면 등의 보기 쉬운 위치에 수위 기준선을 설정하여 보수점검 시에 조의 수평 및 조 내 수위 상승 등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공기배관의 밸브류는 용도별로 조작방법을 표시한 라벨을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 오조작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 또한 밸브류는 개폐용 혹은 미세조정용 등 각각의 사용목적에 대응한 적절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 4)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분리칸막이는 양면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양면보강 안된 제품 설치불가)
- 5) 유량조정조의 오수는 시간대별 발생량이 다르고 변화가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량조정조는 충분한 저장용량과 일정한 유량을 후속 공 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1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산정된 오수발생량보다 30% 여유율을 두어 처리시설 규모 산정한다 (전처리시설 설치 등 성수기 등 이용객 증가시 대비)
- 7) 고농도의 음식점등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유량조정조로 이송
  - 건물용도가 음식점(10㎡/일 이상), 다가구주택(10㎡/일 이상), 대규모숙박시설(10㎡/일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일 경우
  - 유입·유출부에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 오수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8) 전처리 방류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독립맨홀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접촉폭기조 각실에 오니이송용 펌프 또는 에어리프트를 설치함과 더불 어 이송은 유량조정조(혐기여상조)의 유입관 부근으로 하고, 조내(槽內) 각실의 오니 등을 쉽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오니이송관의 토출측

개구부에서 이송되어 가는 곳의 수면까지의 거리는 50mm이상으로 하며 부 상물에 의해 개구부가 폐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오니이송관에 청소구 를 마련 이송관 청소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10) 침전조 월류웨어 설치 및 방류조는 폭600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1) 가설건축물일 경우 톤수에 관계없이 콘크리트박스 시공을 아니 하여 도 된다.(바닥 및 상부 콘크리트 시공) 단, 주차장용도등과 같이 오수처리시설 상부에 하중을 줄 경우 콘크리트박스 시공을 하여야 한다



12) 여수시에 시공하는 오수처리시설 중 10㎡/일부터 콘크리트박스 시공을 하여야한다.

(콘크리트박스 상부보다 밑으로 오수처리설이 충분히 안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박스 상부에 시멘트 시공을 하여야 함)

- \* 설치신고시 콘크리트 박스 설계도면 첨부
- 13) 오수처리시설 10㎡/일이상의 경우 링브로워 설치를 2개 이상 설치한다.
- 14) 폭기실은 10㎡/일미만의 경우 2폭기실 이상, 10㎡/일이상의 경우 3폭기실 이상이어야 한다.
- 15) 생활하수 배관과 분뇨 배관이 만나는 경우 생활하수 배관에 <u>악취 방지</u>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

- 16) 전기판넬(브로워판넬)은 밑 받침대를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고정 시켜야 하며, 임시 전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전기배선 햇빛노출 차단 파복 등 조치)
- 17) 개발행위에서 \*단지형(3가구이상)으로 조성되는 주택은 개별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단지 내 단독주택 오수발생량의 합이 2㎡/일 이상인 경우)

18) 인근 단지형 단독주택 부지의 우·배수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단독주 택도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오수발생량의 합이 2㎡/일 이상인 경우)

- 나.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1) 콘크리트 격벽 두께는 200mm이상 철근구조물로 시공하여야 하며, 벽돌 구조 및 와이어메쉬 시공은 불가하다.
  - 2) 콘크리트 벽면은 반드시 방수도료 시공을 하여야 한다.

## Ⅱ. 사전검사 및 준공검사 내용

- 1. 사전검사(부실시공 및 불량제품 설치 사전예방)
  - 가. 검사대상 : 여수시에 설치하는 2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 ※ 사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톤수 제한 없이 현장 확인 실시
  - 나. 검사내용
    - 1) 공통사항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내용에 적합한 시설물 여부
      - 나) 등록증에 부합한 제품의 구조, 규격, 재질 및 성능기준 적합여부
    - 2) 재질별 점검사항
      - 가) FRP구조(유리강화플라스틱 구조)
        - (1) 시설물 두께 및 재질의 일치여부(본체와 내부칸막이 등)
        - (2) 여수시에 시공하는 오수처리시설 중 10㎡/일부터 콘크리트박스시공여부. (콘크리트박스 상단보다 밑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충분히 안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박스 상부에 시멘트 시공 마무리)

- (3) 코크리트 박스 및 오수처리시설 설계도면 일치 여부
- 나) 콘크리트 구조물
  - (1) 격벽 두께 20cm이상 철근구조물 일치여부 (벽돌 및 와이어메쉬 불가)
  - (2) 방수도료 시공 상태

※ 콘크리트 점검은 설치 현장 확인

- 다. 점검방법 : 시공 전
  - 1) 장 소 : 여수시 하수종말처리장(30㎡/일 미만 규모) \*초과시 현장점검
  - 2) 시 가: 매주 화·목 14:00 ~ 17:00
  - 3) 인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자 외 1인
    - ※ 수밀검사 오수처리시설 제작·설치업체 수밀검사 촬영 CD 또는 USB등 제출
  - 4) 사전검사에서 중대한 결함 시 반품조치
    - 규격미달 및 1곳 이상의 외부누수나 3곳 이상의 내부 누수 -
- 라. 사전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 1) 해당 제품 설계 및 제조업자의 제품 최소 1년 이상 반입금지
  - 2) 기존에 접수된 제품 설치 불가
- 2. 준공 검사 (붙임 1. 시공지침 도면 참조)
- 1) 아래와 같은 시공중 사진촬영 하여야함. (시공업체 기술인력 사진에 찍혀야함)
  - <sup>①</sup>오수처리시설 입고시 명판, <sup>②</sup>사전검사 사진, 공사중 전·중·후 사진, <sup>③</sup>기계장치가동상태 사진, <sup>④</sup>오수처리시설 박스시공 상부 콘크리트 마감 및 <sup>⑤</sup>최종 상판 마감, <sup>⑥</sup>벤츄레타 설치 및 <sup>⑦</sup>방충망 설치, <sup>®</sup>최종 배수구, <sup>9</sup>배근(철근)사진(콘크리트 타설 전), <sup>⑥</sup>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담당자 시공 참여사진 1장 이상
- 2) 상판콘크리트타설, 벤츄레타(2m이상)설치, 유입(유출)배관, 전기 인입 등 공사 완료되어야 함.(1층이상 건물의 악취가 체류할 수 있는 구조는 건축주 협의 하에 벤츄레타를 지붕보다 높게 설치)
- 3) 상기 (1), (2)에 등록된 제품이 아닌 경우 '재질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 4) 임시전기(가설전기)로는 준공을 신청할 수 없음.(준공조건)
- 5) 전기판넬(브로와판넬)은 밑 받침대를 콘크리트타설 등으로 고정시켜야 함. (브로와 판넬로 들어오는 엑셀배관은 햇빛노출을 차단하는 피복 등을 하여야 함.)
- 6) 가설건축물일 경우 톤수에 관계없이 콘크리트박스 시공을 아니 하여도 된다. (단 주차장용도등과 같이 오수처리시설 상부에 하중을 줄 경우 콘크리트박스 시공을 하여야 한다)
- 7) 특히 방류지점(구거)을 필히 확인 하여야함.
  - 준공검사 신청시 최종 배수계통도가 표기된 설계도면 제출 (건축 및 토목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8) 맨홀 뚜껑은 10톤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화플라스틱(FRP 혼합소재) 이상의 우물정자

- (#)형 안전망(STS환봉)이 내장된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함.
- 9) 오수처리시설의 폭기시설과 파이프 연결부위 실리콘부속으로 하고, 밴드는 반드 시 도금제품으로 설치함.
- 10) 준공검사 신청시 공사중 촬영된 사진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11) 오수처리시설 전기판넬에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시 준수사항'을 부착 하여야 한다.(의무사항)
  - ※ 사후 실명을 위하여 시공사 상호 및 전화번호가 명시된 인쇄물 부착(표시)
- 12) 준공시 오수처리시설 내부에 물을 전부 채워야 함(정상가동 수위까지)
- 13) 준공검사 하루 전 오수처리시설 기계장치에 전원을 투입하여 정상가동 여부 를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업자는 오수처리시설 상부 콘크리트(아스콘) 마무리 <u>반드시 현장에 입회 맨홀 높이, 수평, 구배 반드시 확인</u>하여야 한다.(사 진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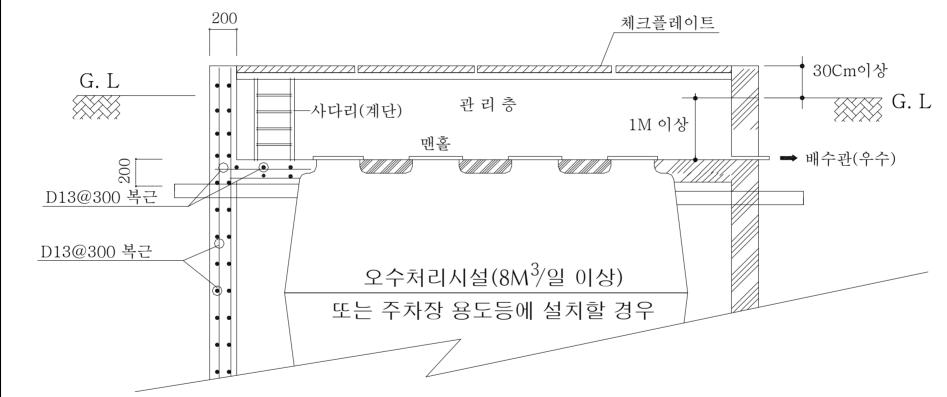


# Ⅲ.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지침 예시(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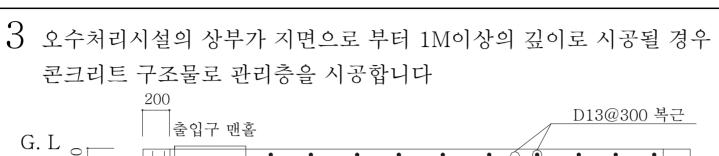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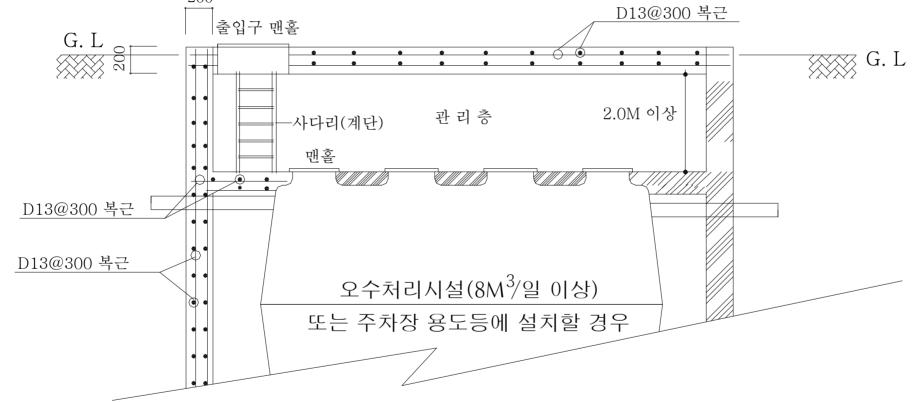
배관구배에 따른 시설의 깊이는 가능한한 1M 이하로 해야 합니다 깊이 1m이내 깊이 1m이상 G. L G. L G. L G. L 지면으로부터 1m가 넘는경우 토압이 정화조 본체에 걸려 변형 및 파손의 경우가 생긴다.

2 오수처리시설의 상부가 지면으로 부터 1M이상의 깊이로 시공될 경우 체크플레이트로 관리층을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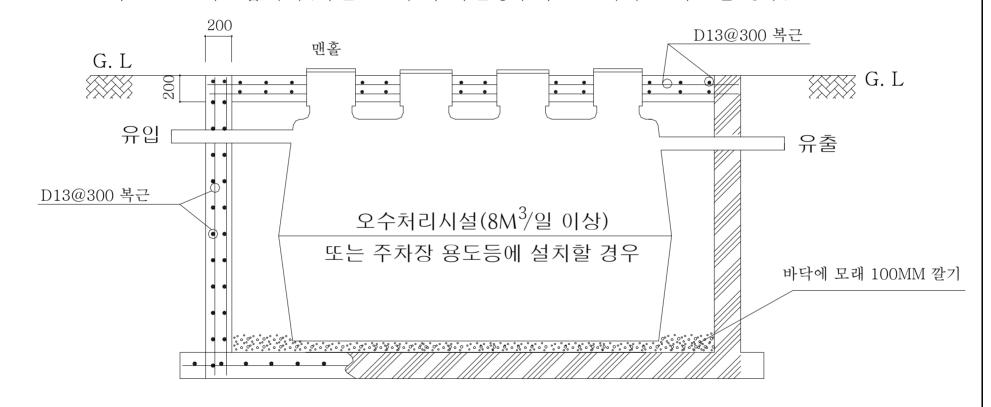


콘크리트 바닥에 모래(또는 마사)를 100MM 이상 깔고 필히 시설을 안착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배근도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굵고 간격을 좁혀 시공하십시요 최소한의 레미콘타설도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두껍게 타설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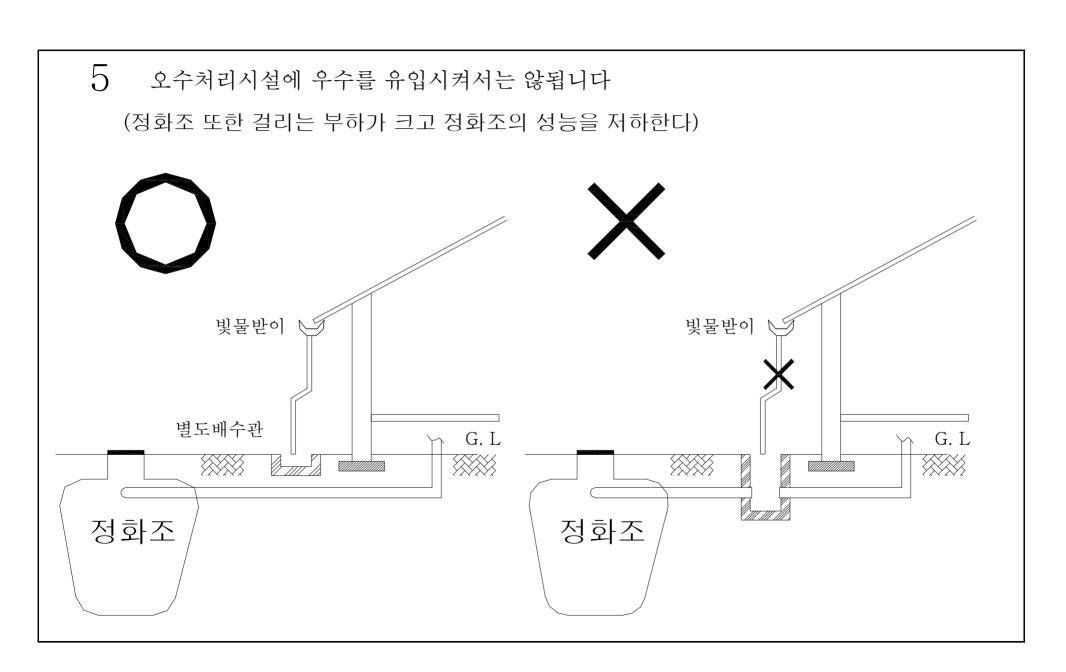




콘크리트 바닥에 모래(또는 마사)를 100MM 이상 깔고 필히 시설을 안착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배근도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굵고 간격을 좁혀 시공하십시요 최소한의 레미콘타설도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두껍게 타설하십시요 4 옹벽 및 상판 철근 두께는 13MM이상 간격 300MM 이하로 복근으로 시공합니다(지면으로부터 시설상부와 1M 이하로 시공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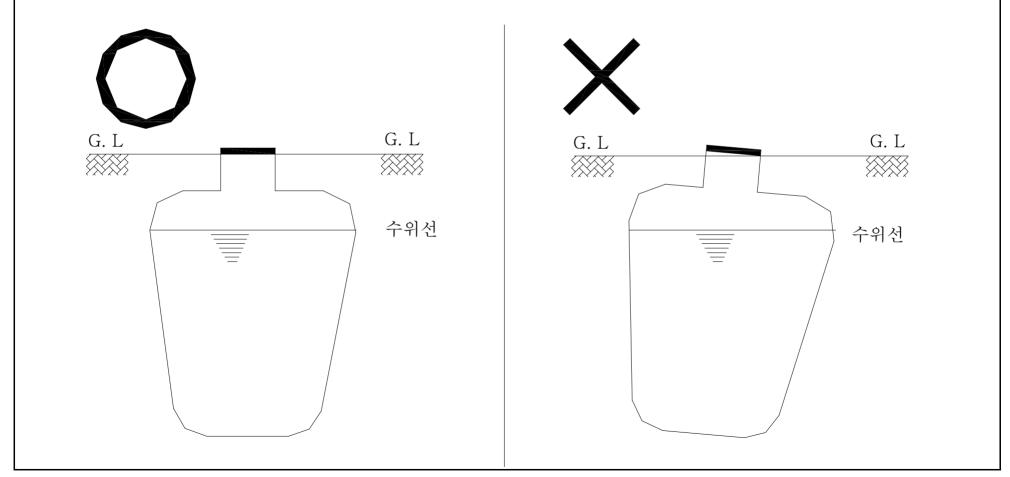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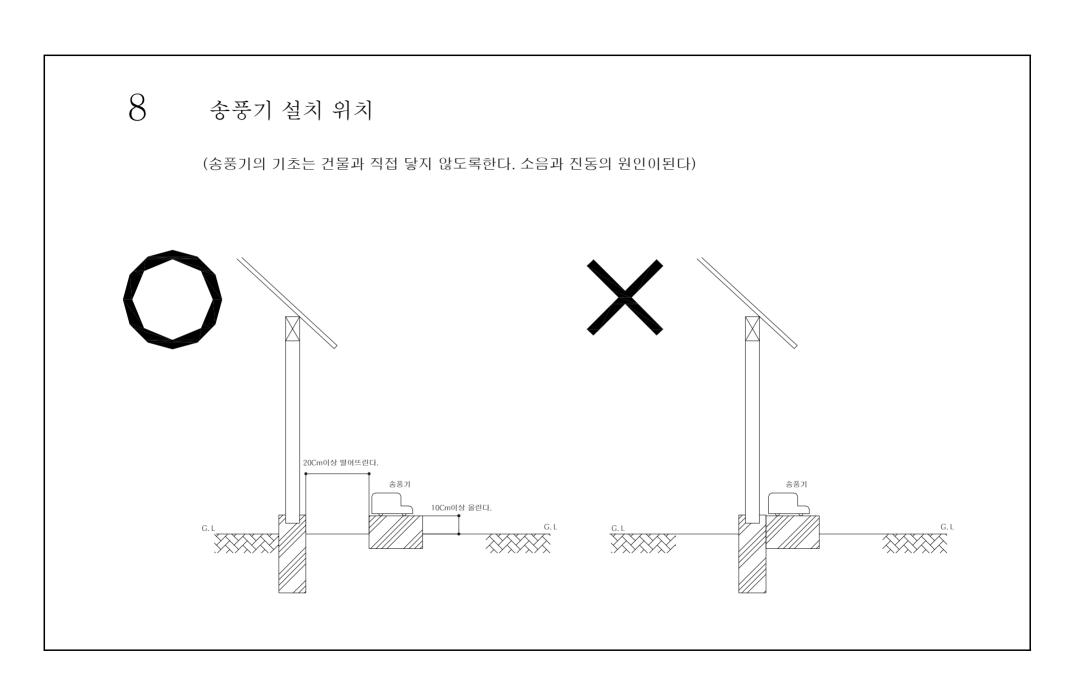
콘크리트 바닥에 모래(또는 마사)를 100MM 이상 깔고 필히 시설을 안착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배근도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굵고 간격을 좁혀 시공하십시요 최소한의 레미콘타설도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두껍게 타설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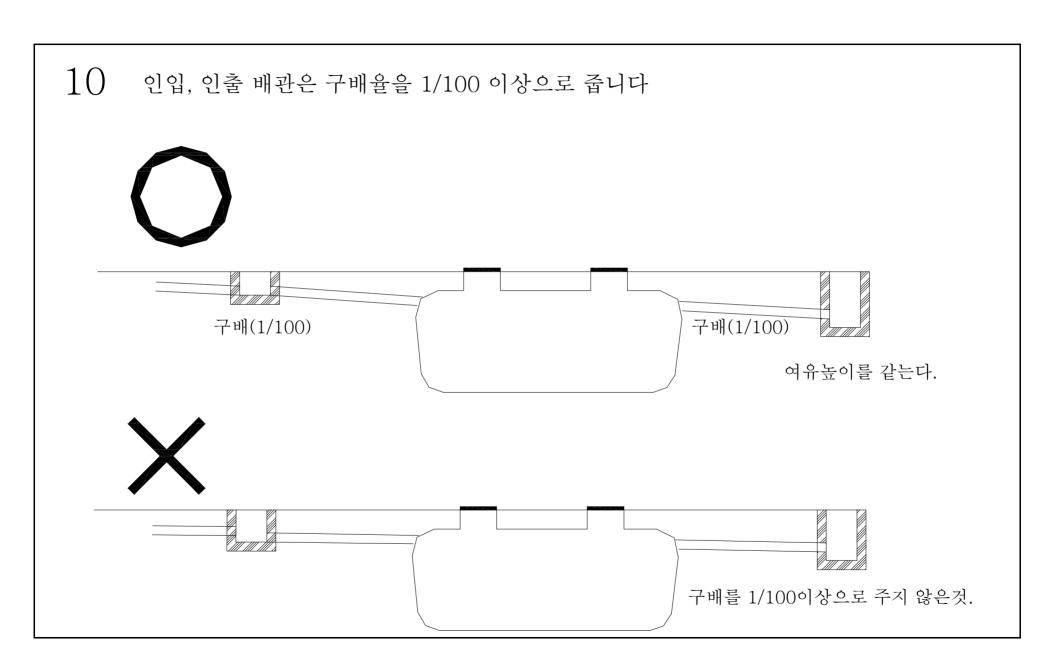
6 맨홀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여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합니다 맨홀 뚜껑 G. L G. L 본체에 붙어있는 거푸집이나 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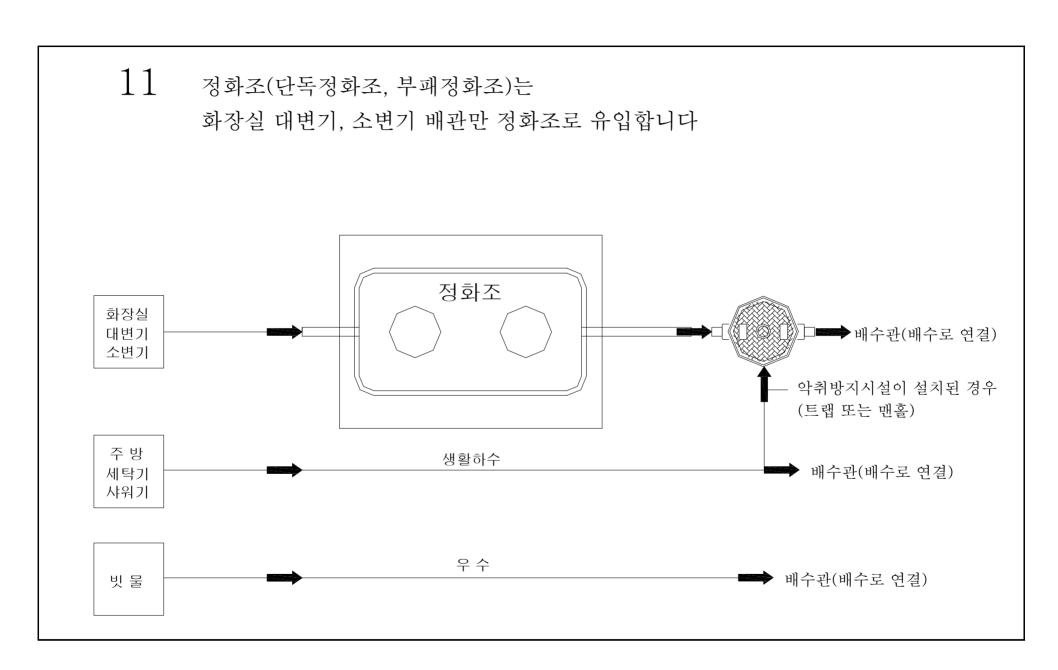
# 7 시설은 수평으로 설치시공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수평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수위차에 따른 정화조의 성능이 저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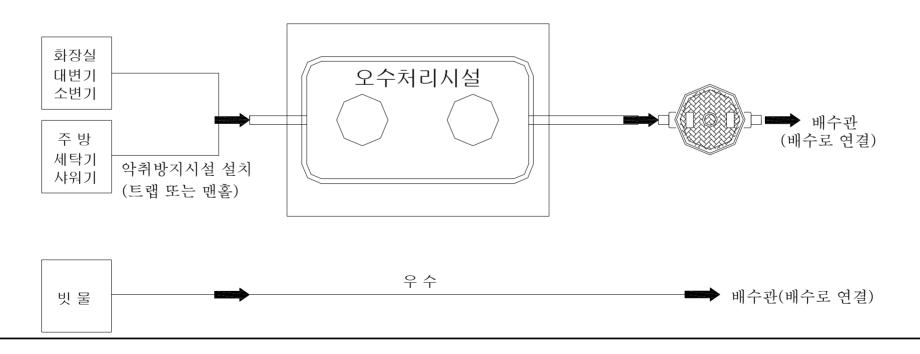


전기는 전용누전차단기를 건물에 설치하여 송풍기까지 전선관으로 시공합니다 누전차단기 (E L B) 전기 배선공사는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 CONTROL BOX 브러워 판넬 전선관 시공 아연도금 두께 7mm 이상 30cm이상 송풍기 산기배관 노출시 피복시켜야 함 G. L 접지봉 \브러워 산기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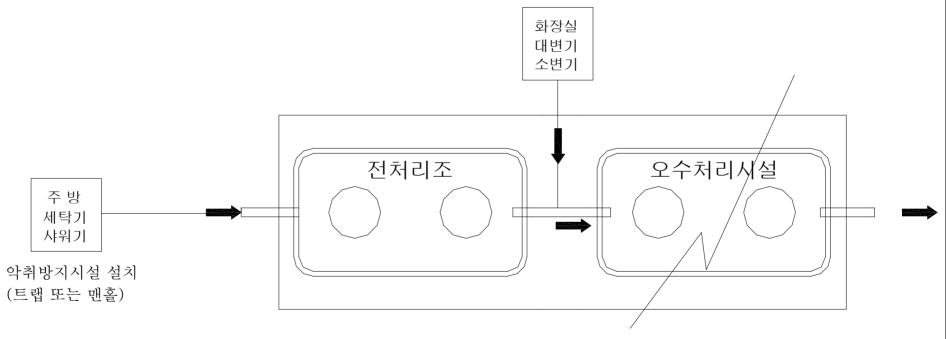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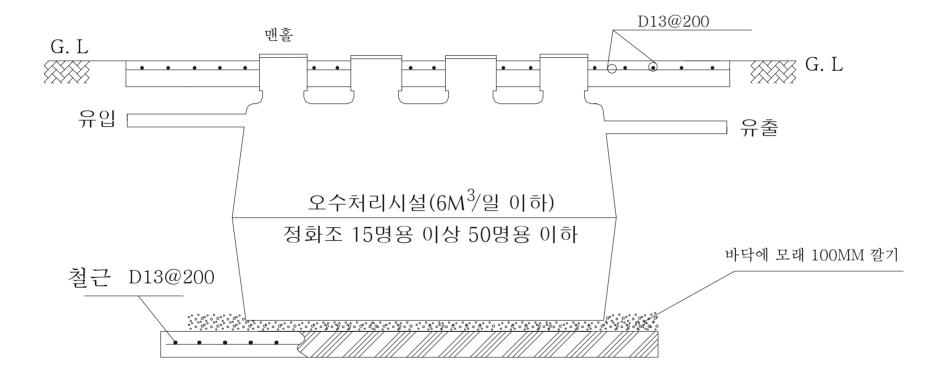
12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은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합니다 (우수배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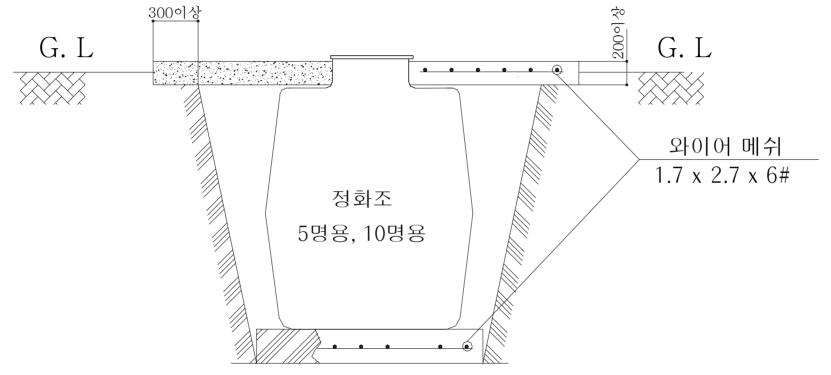
13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의 배관은 아래와 같이 할수도 있습니다 (전처리조 시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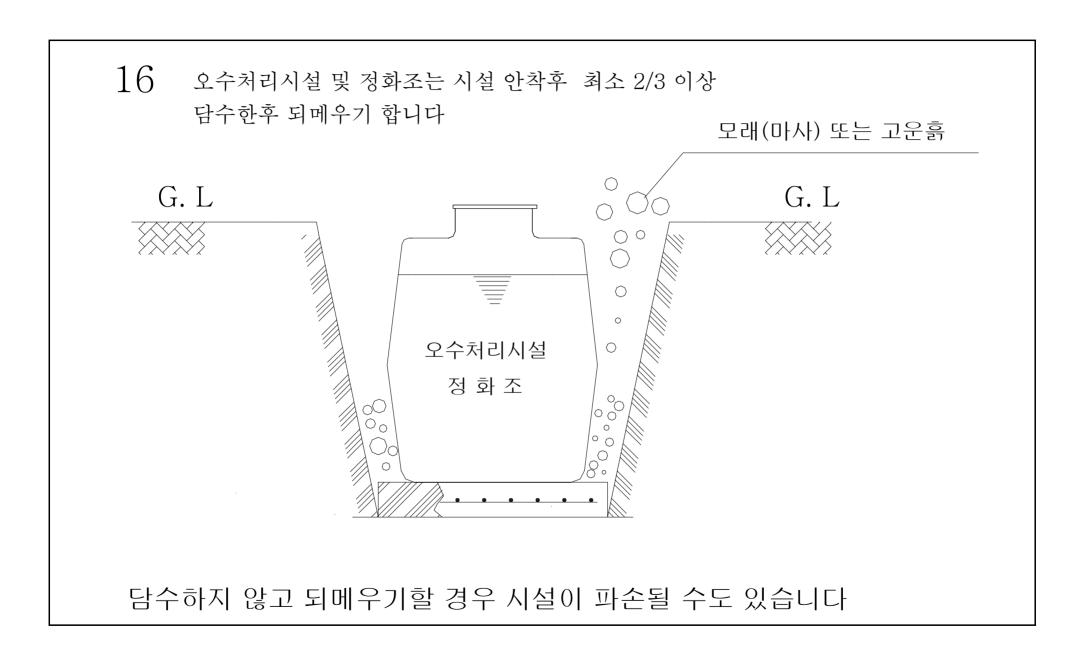
전처리조를 FRP로 제작설치시 FRP 오수처리시설의 본체와 동일한 직경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전처리조 용량을 기준치보다 크게 하여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배관을 전처리조에 유입처리할수 있습니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배관을 전처리조에 유입처리할 경우 반드시 전처리조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4 하판 및 상판 철근 두께는 13MM이상 간격 200MM 이하로 시공합니다 (오수처리시설  $6m^3/$ 일 이하, 정화조 15명용 이상 50명용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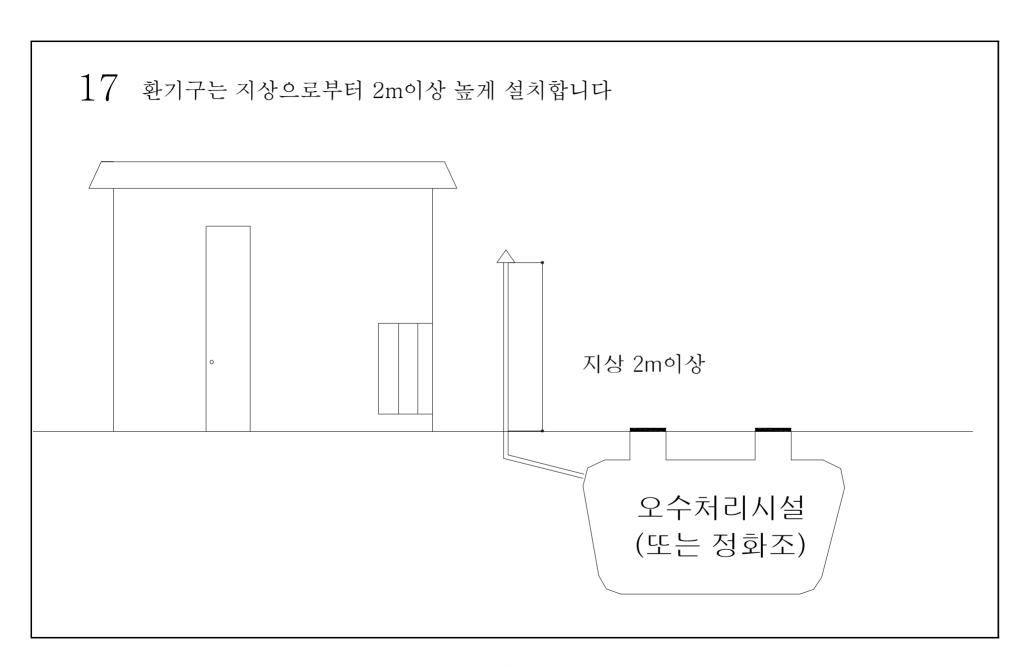


콘크리트 바닥에 모래(또는 마사)를 100MM 이상 깔고 필히 시설을 안착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배근도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굵고 간격을 좁혀 시공하십시요 최소한의 레미콘타설도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두껍게 타설하십시요 15 정화조(5명용, 10명용)는 하판, 상판 모두 콘크리트 200MM 이상 도로용 와이어메쉬(6#) 이상을 깔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와이어메쉬 시공도 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견고하게 시공하십시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셔도 됩니다 최소한의 레미콘타설도이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더 두껍게 타설하십시요





# Ⅳ. 부칙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에 신고(변경신고 포함)한 오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는 기존의 준공검사 방법을 적용한다.

#### [붙임 1]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 는 제3호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제품을 시공할 수 있다.
-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 가. 외압・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강도에 관한 부분.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 계통에 관한 부분.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설계는 제조제품의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다.
-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다.
- 5.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부실하게 시공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 6.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쳤을 때에는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하여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7. 설계·시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9.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1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붙임 2]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2.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3.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 · 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 4.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5.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 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8.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 9.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0.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1.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 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 [붙임 3]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유의사항 】

- 1. 검사필증 분리 : 몸체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검사필증을 분리, 기계실 내부에 부착하여 시설물의 내역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 터파기: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크기 보다 사방 50cm이상 넓게, 깊이는 바닥 및 상부 콘크리트 공사 등을 고려하여 본체와 맨홀을 포함한 높이 보다 30~50cm 정도 더 깊게 판다.
- 3. 보강공사 : 바닥이 침하되지 않게 단단히 다진 후, 철근(와이이메쉬 사용금지)을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를 100mm이상 타설하여 기초 보강공사를 실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상부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보호구조물(측면 및 상부까지)을 설치.
- 4.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착 : 콘크리트가 양생되기 직전 유입배관 높이 확인 후 개인하 수처리시설을 수평에 맞게 설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바닥 면에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
- 5. 오수배관 설치 : 오수배관이 원활하게 충분한 구배로 유입배관 및 방류배관을 설치하고 트랩이 없는 배관(화장실바닥배관, 세탁실 등)은 냄새가 역류할 수 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입 전에 오수받이를 설치한다. 트랩이 있는 배관은 별도로 유입.

배수용량	30톤 이하	60톤 이하	100톤 이하	100톤 초과
배관직경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 6. 물채우기 : 유입구부터 홀수조마다 끝까지 물을 채우고 2차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격 벽의 이상 유무를 확인.
- 7. 에어배관연결 : 개인하수처리시설 PVC PIPE에 급수전 소켓(또는 급수전 엘보)과 엑셀밸브 소켓을 사용하여 XL PIPE(기계실까지 연결)를 연결.(에어누출 방지)
- 8. 기계실 설치 : 에어배관(XL PIPE)을 각각의 용도에 맞는 송풍기에 연결하고 기계실을 고정한 후 지상노출 에어배관(XL PIPE)은 보온재 등으로 자외선 접촉을 차단.(파손 우려)
- 9. 환기구 설치 : 환기구는 지상 3M이상으로 설치하고, 상단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발생 가스를 배출한다. 방충망을 설치하여 환기구를 통한 위생해충 유입을 차단.
- 10. 되메우기 : 모래나 석분 또는 부드러운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실시한다(몸체 파손주의). 되메우기 시 물다짐을 실시하고 며칠 간 방치하여 자연침하를 유도.
- 11. 안전망 설치 : 안전망은 철근으로 하되 부식을 막기위해 XL PIPE를 씌워 시공.
- 12. 상부마감 : 침하가 완료되면 맨홀 안쪽에 격자형으로 안전망을 설치한 후 맨홀을 고정한다. 이때 우수유입 방지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 지반선과 일치되거나 약간 높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상부를 마감.

#### [붙임 4]

## 【 공사 중 사진 촬영 방법 】

- 1. 사진촬영 시 지켜야할 사항
  - 가. 모든 사진촬영 시 촬영일시를 보드에 기록할 것.
  - 나. 설치시공업체 담당자의 전신이 나오게 촬영할 것.

#### 2. 촬영과정

- 가. 터파기 후 건물과의 거리측정 사진.
- 나. 바닥콘크리트 타설, 철근 및 보호구조물(박스) 설치 사진.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착 사진.(반드시 몸체 검사필증 분리)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1/3까지 되메우기 및 물다짐 사진.
- 마. 유입배관 및 유출배관 직경 사진.
- 바. 유입배관 사진.(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입까지)
- 사. 유출배관 사진.(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까지)
- 아. 에어배관 연결 사진.(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기계실까지)
- 자. 되메우기 및 물다짐 사진.
- 차. 안전망 또는 맨홀에 격자형 철근 설치 사진.
- 카. 검사필증 부착사진.
- 타. 상부마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경.(환기구, 기계실까지)
- 파. 최종방류 전경(우수맨홀, 하천방류 배관)

#### [붙임 5]

## 【 콘크리트 박스 설치기준 】

시설 구분	시설 용량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 여부	철근 두께	철근 간격	
오수처리시설	10㎡/d 시설	설 치	10mm 이상	300mm 이하	

※ 단,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의 경우 안전성 확보시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 예외 적용

## [붙임 6]

##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Check List 】

건 축 주				설치장소	( <del>28</del> :	)				
	① 상호(	명칭)				② 등록번호				
시 공 자	③ 사무실	일 소재지		<b>(</b> 8:		)				
		④처리용량(㎡/일	!)							
제 조 자	⑤ 상호(	명칭)				⑥ 등록번호				
제소자	⑦ 사무실	일 소재지								
			:	검 사 내 원	<del>}</del>					
		항 목				검 사 내 용		적/부	해당 없음	
1) 전체 및 공	공정별 규격	<sup>†</sup> 적정여부				규격 표시				
2) 제품 두께	및 재질의	l 적정여부				두께 표시				
3) 보강링 설	치상태의 결	적정여부				재질, 규격, 수	량			
4) 안전망 및	맨홀테 올	음림의 적정 설치(	겨부			규격, 수량				
5) 균등분배	할 수 있는	: 시설 설치여부				유량조절장치				
6) 산기관 설	치상태의 3	적정여부				설치상태, 수량				
7) 접촉여재	설치상태의	l 적정여부				길이 × 개수				
8) 품질표시기	준의 적정	J 여 부				사진첨부 및 서류				
9) 제품의 변	형을 방지히	하기 위한 박스 성	설치성	낭태의 적정	여부	규격, 재질				
10) 웨어설치	상태의 적	정여부				웨어 길이				
11) 기타 제3	도 및 설치	기준의 적합여부								
12) 검사 결고	바에 따른 급	검사자 의견(변경	또는	를 추가 포함	함)	(참관인:			)	
			년	월	일					
검 사 :	ΤI	소 속		직	위	Ś	성 명			
	<b>Λ</b> Γ	소 속			위	ć	성 명			
시공확인	사	소 속		직	위	Ś	성 명			
						소 속				
종합검토지	· 의견					직 위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 [붙임 7]

오수처리시설 사전검사 신청서							
① 신 고 인			② 건 물 용 도				
③ 설 치 장 소							
④ 처 리 방 법			⑤ 재질 및 제조공법	FRP			
⑥ 처리대상 인원			⑦ 처 리 용 량	m³/일			
의 뢰 인	® 상 호 (성명)		⑨ 등 록 번 호				
의 되 인	⑩ 주 소						
	⑪ 업제명		⑫ 등록번호				
시 공 사	③ 주 소 (연락처)						
사전검사입회자							
		20 년 월	! 일				
			의 뢰 자 :	서명			

##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시 준수사항

- 1. 폭기장치(부로와)는 정화조에 공기를 유입하여 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장치로서, 고의로 전원을 차단하여 비정상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안됩니다.
-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2. 준공일로부터 110일이 경과한 후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용개시 후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기간동안 입주 지연 등으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의 지연사유 및 사용개시 예정일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통보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방류수 채취)하여야 합니다.
  -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운영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 3.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등을 하고 발생된 찌꺼기등은 탈수하여 처리 하거나 분뇨·수집 운반업자 에게 위탁처리 (오수배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 발산 및 파리·모기 등의 발생·번식을 방지) 하여야 합니다.
-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붙임 9]

## 【 맨홀뚜껑 도색 및 표지문(예시) 】





## [여수시 공고 제2021-3214호]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984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 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격	1			82		
돌산읍 금봉리	984	55.8	1.47	8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 2021-3215호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연장 허가	양식업의 종류	면적 양식장		면허기간	연장허가	수산자원 조성금	양 식 업 권	비고	
번호	번호	0 II (양식방법)	(ha)	위치	근에기단	기 간	(천원)	주 소	성 명	017
11296	2021- 33	패류 양식업 (바닥식)	15.00	화정 여자	2012.01.16. 2022.01.15.	2022.01.16. 2032.01.15.	-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여자 어촌계	
11297	2021- 34	패류 양식업 (비닥식)	15.00	화정 여자	2012.01.16. 2022.01.15.	2022.01.16. 2032.01.15.	_	여수시 회정면 여자리	여자 어촌계	

문의전화: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1. 12. 02.

여 수 시 장

### 여수시 공고 제2021-3224호

## 공 고

「여수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1년 12월 2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 1. 모집기간 : 2021. 12. 2. ~ 2021. 12. 17.(15일간)
- 2. 모집인원 : 5명
- 3. 위원회 역할 :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심의 · 의결
  -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 직권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4. 자격기준

-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 선정방법 : 서면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6. 선정기준

- 여수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없을 경우 전라남도내 거주자로 선 정
- 경력이 풍부하고 여수시 현안사항 및 지역여건 등에 밝은 사람 우선 선 정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선정
- 7. 대상자 선정 통보 : 2022. 1월중(개별 통보)
- 8. 접수장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2** 061-659-3355)
- 9. 신청방법 : 붙임 지원 신청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 팩스 (061-659-5810), 전자우편(dusgml1745@korea.kr) 신청
- 10. 제출서류 :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지원 신청서(자격 증명서류 포함) 및 자필 이력서 각 1부

## 11.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5)로 문의 하시 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

				접수	- 번호		
성 명	한글 : 한자 :		연 락	- 처	집 : HP:		
주민등록번호			(1	간 /	세)		
주 소	(도로명주소)						
직 업		직:	장소재계	रो			
(구체적으로기재)		ス こ	, 종				
여수시 거주기간		~ .	•	(	년 월	<u>!</u> )	
	위원회명	직	위		기 긴	<u>}</u>	비고
각종 위원회				•	. ~		
참 여 경 력							
기타 특기사항							
위와 같이 여	여수시 도로명주소	_위원회	위원 <u>으</u>	로 참 <sup>c</sup>	겨하고자	지원 신치	청하오며,
기재사항은 /	사실과 다름없음·	을 확인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	인 :		(	서명 또	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서(사진 부착) 1 증명 서류 1부	- <u></u> 부			신청	수수료	: 없음

						०]	i	력	서	
사		<del>ر</del>	]	성명(한자)					주 민	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드 드	록기	준지								
주		소	-							
년	월	일			학	력	사	ठो		학교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王人	상 및 형	벌 사	항		기 관 명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인)

#### 여수시 공고 제2021-3225호

# 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36조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행정 처분 사전통보서(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

## 여 수 시 장



#### 1. 처분 대상

SULL TI	성명	박*규					
대상자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독정길 18-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유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3호,제4호					
처분 내용	농업생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 취소(화태리 104-4, 311.1㎡)					
법적근거	「국유재산법」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1. 12. 2. ~ 2021. 12. 17. (16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청문사항

- 일시 : 2022. 1. 4.(화) 14:00

- 장소 : 여수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5. 청문 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설과(061-659-4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